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11. 21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각동 세무담당직원(16명)을 구본청으로 재배치조정코자함 《자체상계조정》
- 기획실 신설, 주전산기 운영요원 확보 및 계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(5명)을 보강코자 함.
- 기획실장 1명, 전산관리계 2명, 생활공해계 1명, 부동산관리계 1명-

2. 주요골자

- 구의본청, 의회사무국,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.
- 계 : 780명 《증5명》
- 구 본 청 : 454명 《증19명》
 - ※ 인력보강 : 기획실장 1명, 계장요원2명, 주전산기운영요원 2명
 - ※ 동 세무담당직원 구본청으로 재배치 : 16명
 - ※ 의정계 인력보강에 따른 구본청 인력감축 : 감2명
- 의회사무국 : 18명 《증2명》
 - ※ 의정계 인력보강 2명
- 보 건 소 : 46명 《변동사항없음》
- 동 : 262명 《감16명》
 - ※ 동 세무담당직원 구본청으로 재배치 : 16개동 감16명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3조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제21조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구 본 청 : 454명
2. 의회사무국 : 18명
4. 동 : 262명

부 칙

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2조(정원의 총수) 구의본청(이하“구본청”이라 한다), 의회사무국, 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구 본 청 : <u>435명</u> 2. 의회사무국 : <u>16명</u> 3. 보 건 소 : <u>46명</u> 4. 동 : <u>278명</u>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구 본 청 : <u>454명</u> 2. 의회사무국 : <u>18명</u> 3. ----- 4. 동 : <u>262명</u>